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재)자유기업원 외 2인

소송물가액 금 300,000,000원

첨부인지액 금 원

송달료 금 원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대표자 박 은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해람합동법률사무소

피 고 1.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4층

대표자 이사장 송 자

2. 민 병 균

3. 박 종 찬

피고 2,3의 주소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4층

(재)자유기업원 내 (☎ 6730-3001,2)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피고 민병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피고 박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박종찬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 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1994년 “각계 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시민단체로서(갑제1호증, 정관 제2조) 그동안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및 토론과 시민들의 의사형성을 위한 사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 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정관 제4조)

피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함)은 2000년 7월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민병균은 피고 법인의 원장이며, 피고 박종찬은 피고 법인의 NGO실장인데,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입니다.

II. 피고들의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민병균은 2001. 5. 2.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하로 아래와 같은 글을 피고 법인 소속의 회원 등 약 500여명에게 전자우편(e-mail)로 송신한데 이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fe.org>”에 이를 게시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함)(특히 밑줄 친 부분이 원고에 대

한 허위의 사실이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임, 이하 같음)

市場經濟와 그 敵들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복잡성을 얘기한다면 심드렁할 정도로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환경 속에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은 심상치가 않다. 지금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무역전쟁중이다. 세계적인 전쟁을 '무한경쟁' 이라고 한다. 승자만 사는 시장을 세계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어제의 모습이 아닌 디지털 세상이요 네트워크 세상이요 또 무선통신의 세상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전쟁의 와중에 어이없게도 우리에게도 또 다른 고전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에 치렀던 6·25전쟁의 망령이다. 아니 6·25전쟁의 지속이 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구시대의 전쟁을 소리 없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는 '민노총'이라는 노동단체가 힘을 쓰고 있다. 어느 기업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전임노조원 월급을 안 줄 수 없으며, 그런 연고로 원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게 돼있다.

교육계에는 '전교조'라는 노조가 용인되어 있으며 교육제도는 국가교육제도화 되어 어느 누구도 학교 선택권이 없고 학교는 학생 선발권이 없으며 어느 학교도 등록금을 마음대로 징수할 수 없고 교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다. 대학의 경우 마음대로 주관식 시험을 치를 수도 없고, 학과를 개설할 수도 인원을 조정할 수도 없다. 이 모두가 교육부의 권한이다.

사학교육제도에 관해서는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대표가 교장을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사립학교인데도 정부가 모아주는 학생을 받아야 하고 정부가 결정한 등록금만 받아야 하고 정부가 허가해야만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교장 임명권 등 운영권까지도 위원회에 넘기려 하고 있다.

재벌개혁에 이르러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울려서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가급적 기업의 대주주를 억압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문어발 식 투자를 막는다고 해서 상호지급보증을 줄이게 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라 하고 또 계속 감시감독하기 위해 재벌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고 있다. 그래도 기업은 다른 부문 보다는 아직은 형편이 나은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에는 언론계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다. 소위 조중동 (조선·중앙·동아) 이라는 3대 중앙지를 탄압하기 위해 무가지 발행을 제한하고 구독료를 심사하고 영업방식을 규제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언론사 주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도모한다고 한다.

지난 수년동안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대주주 및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는 무시무시한 목표가 숨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액주주를 위한 운동은 만일 성공한다면 그 성공한 때가 바로 그 운동을 중지해야 하는 그리고 바로 본색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재정통합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민중의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그 원인을 이상한 데로 돌리려고 난리다. 책임지는 일 없이 교묘히 투쟁하여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별해 볼 때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등과 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소위 '민중'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개혁일런지는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정지되며 도덕이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 어찌하다가 우리가 좌경화의 길로 들어섰는가.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결기가 필요하다. 좌익(左翼)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右翼)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 bkmin@cfe.org)

2. 피고 법인의 원장인 피고 민병균은 2001. 3. 초순경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글 또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fe.org>”에 게시하여 공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함)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 !

원장 민병균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는 이 운동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4년 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그 동안 아무도 시도해 보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어느 정도 그 목적인 바를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대기업집단이 소액주주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2. 그러나 2001년 현재 참여연대가 계속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과도한 것이며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점 심분 숙고하시어 앞으로는 소액주주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3. 아울러 경제문제에 관하여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선 "은행소유지분(8%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법규)한도"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금융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망컨대 소유지분확대가 결국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장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한국의 환율제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미 1997년 환난이후 확고하게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연대에서는 이것도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역하는 무모한 주장입니다. 부디 주장을 거두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기왕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그 동안 교육, 노동, 그리고 기업문화와 관련하여 하고 싶었던 몇 마디를 첨가코자 합니다.

1. 자유기업원은 문명으로서의 한국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도, 시장, 경쟁, 우리의 말, 법, 상관습에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이 얼마나 실업을 양산하고 있는지, 한국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이민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사업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수많은 NGO가 얼마나 기업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3. 자유기업원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건너야 할 고갯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교육, 노동, NGO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폐해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더 이상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피차에 바라기를 양청하는 바입니다.

3. 피고 박종찬은 2001. 3. 2.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fe.org>”에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활동해야”라는 제하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함)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활동해야

시민운동의 의미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데 있다. 한국의 현대사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해 온 과정이라고 할 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운동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과거 변혁적 민중운동의 전통을 이어 자본주의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따라 일반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순수 시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지만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소액주주운동의 목표는 “민에 의한 자본통제”

소액주주운동은 원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장하성 교수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이며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기업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원순 사무처장도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여연대가 벌이는 소액주주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운동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 99년에 SK텔레콤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참여연대는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강행하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유

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액면분할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타이거 펀드도 1천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법원에서도 SK텔레콤의 유상증자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볼 때 SK텔레콤의 유상증자는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서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임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것이다.

한편 데이콤의 사례는 소액주주운동이 기업가치 극대화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으로 데이콤을 선정하자 데이콤 경영진은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데이콤 우리스주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2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했다. 데이콤의 결정에 대해서 장하성 교수는 "깜짝 놀랄만한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극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기업가치의 폭락이었다. 데이콤은 노조의 장기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라는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을 벌일 당시 70만원대였던 주가가 1년여만에 3만원대로 폭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나 데이콤 노조는 데이콤 사태를 전적으로 경영진의 잘못으로 돌리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장하성 교수나 박원순 사무처장이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실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이었던(現 부집행위원장) 성공희대 조희연 교수는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에서 소액주주운동이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민의 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본질이 주주, 즉 자본가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조희연 교수의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운동이 역으로 참여연대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감당하기 힘들다.

노동자가 주인인가 시민이 주인인가?

시민이라는 말은 원래 부르주아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그 의미는 확대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일반 시민은 노동자와 노조원, 자영업자, 기업가, 회사원, 공무원 등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비판과

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99년에 서울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YMCA를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가 시민의 피해를 이유로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다음에는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다.

또 참여연대는 노조가 벌인 수많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면서도 불법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폭력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호텔 노조원의 파업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을 규탄하면서도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연대의 협동사무처장인 김호기 교수나 부집행위원장인 조희연 교수등은 참여연대가 노동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채운석 前사무금융노련 위원장도 참여연대가 "노동자와의 연대 수준을 높여 노동자를 사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사회개혁과 진보의 길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참여연대가 노동운동세력과 연대해서 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운동이 일반 시민의 이해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참여연대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한 의미의 시민단체라면 노동운동에 대해서 시민의 이해를 기준으로 지지와 비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의 성공을 위하여

참여연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과거 민중운동의 모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활동 중에는 민중운동적 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초계급적 이슈,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슈들이 많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소위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자기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참여연대가 비계급적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들이 언제든지 계급지향의 사회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의 발전은 물론 참여연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 노동운동을 포함한 변혁적 민중운동과 일정한 선을 분명하게 그을 것을 제안한다. 참여연대가 모토로 내세우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맞다면 민

중운동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참여연대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피고 박종찬은 2001. 3. 9. “소액주주운동 유감”이라는 글을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fe.org>”에 게시하여 공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함)

소액주주운동의 본질은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그 동안 경시되어 왔던 소액주주의 권리를 생각하게 하고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점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량기업들이라는 점이다. 높은 수익을 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왜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기왕에 높아진 기업의 가치를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더욱 높이자는 취지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취지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9년에 SK텔레콤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유상증자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사실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것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비로소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K텔레콤의 유상증자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그렇지 않다. 유상증자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타이거 펀드는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천 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액면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그 결과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법원도 경영진의 유상증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SK텔레콤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데이콤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참여연대는 데이콤을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콤은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장하성 교수는 “깜짝 놀랄만한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했고, 언론들도 “데이콤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춰서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소액주주운동을 벌일 당시 70만원대였던 주가가 그 후 1년이 못돼서 3만원대로 폭락하고 말았다. 데이콤 사례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별로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장 장하성 교수는 금년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준비하면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 돼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이며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면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과연 장담할 수 있는 일일까?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의 부집행위원장인 조희연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을 아예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민(民)의 활동의 한 측면"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운동의 본질이어야 할 주주의 이익은 부차적이고 한시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운동이 어찌다가 민중운동의 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말았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결국 참여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잘못된 대상 선정에다가 이데올로기적 경향성까지 더해지면서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선진국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하성 교수가 "세계적인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이 헐값에 팔려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칼이나 막 쓰는 게 아니다. 용도에 맞는 칼이 따로 있다.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은행을 민영화시켜서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석이다. 은행의 소유지분 확대에는 반대하면서 소액주주운동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시장이 아닌 시민단체에 의한 기업의 통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의 간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투명성 못지 않은 할인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소액주주운동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참여연대의 손을 떠나 주주의 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박종찬, 자유기업원 NGO실장, pjc@cfe.org)

5. 피고 박종찬은 2001. 4. 18.경 발간된 잡지 "월간조선" 2001년 5월호에 "참여연대는 정치적 권력기구로 변질되어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제하로 아래와 같은 글을 기고하여 이를 공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5기사"라 함)

자유기업원 NGO 실장, 참여연대의 이념성 공개 비판

참여연대는 정치적 권력기구로

변질되어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등의 현안에 개입 심판자 역할
- 자기들 요구 받아들이면 문제 안 삼고, 타협 않으면 집중 공격
- 親민중운동·親노동운동·체제변혁 지향
- 프로도 풀기 어려운 사안에 아마추어 지식으로 개입

朴 鍾 燦 자유기업원 NGO실 실장

非정치성·도덕성이 시민단체의 존립기반

21세기를 시민단체(NGO)의 시대로 규정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국제적·지역적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십여년 간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참여연대)는 1990년대 중반, 經實聯(경실련)을 비판하면서 급속히 세력을 넓혀 갔고, 金大中 정부 출범 후엔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면서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부상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것이며, 非정치성, 공정성,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이 그 존립 기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압력단체,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변질되면서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시민단체의 간부 중에는 시민운동을 이

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그람시가 주장하는 陣地戰(진지전)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에서 副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공회대학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시민운동기구들
이 기존의 「체제 내적인」 시민운동과 연대하고 동시에 「체제 변혁적인」 민중운동과 연대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운동을 변혁적 민중운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
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을,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
각은 시민운동가들의 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등과 공평,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우선, 이념적인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평등」과 「공평」을 우선시하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계급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빈민, 즉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내의 자칭 진보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특징은 탄생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인 金永來(김영래·아주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는 1980년대 재야운동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조희연 교수가 참여연대를, 親민중운동 혹은 親노동운동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참여연대는 정치적·사회적 권력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현안에 개입하여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참여연대 산하 조직인 경제민주화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납세 운동본부, 議政(의정) 감시센터 등을 통해 國政(국정) 운영,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가 풀기에도 어려운 사안을 어설픈 아마추어의 지식으로 개입하다 보니 건설적인 代案을 내기 보다는 문제점만을 들춰냄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참여연대는 모든 문제를 여론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참여연대는 참여 교수들이 칼럼이나 기고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알리는 한편, 시위·집회 등 사회의 시선을 끄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소위 여론몰이를 선호한다.

지난 번 참여연대가 제기한 모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참여연대측은 판결문을 전국의 법조인에게 돌리고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법과 원칙보다는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참여연대는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협상과 딜(deal)을 선호한다. 참여연대는 몇몇 대기업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문제삼지 않으나, 타협하지 않을 경우 집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회사측이 참여연대가 추천한 社外이사를

받아들이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던 반면, 자신들이 추천한 社外이사 선임을 거부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표 대결로 끌고 가 8시간 이상 회의가 계속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인색한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3월 全經聯(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이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소액주주 운동이 자칫 기업의 對外(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全經聯은 재벌기업의 走狗(주구)』라는 등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운동이 株主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면...

참여연대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株主(주주), 勞組(노조), 시민단체 등 기업경영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권력을 나누어 갖자는 의미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의 김기원 교수는 「재벌 총수체제의 해체가 경제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는 그룹식 경영의 해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은 정치집단화되고,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성과 신속성을 잃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기업경영에 「종업원 자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켰으나, 「내일의 뭉」보다는 당장의 「제 뭉 찾기」를 주장하는 과도한 분배 요구로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실패로 끝났다.

사실 재벌체제는 우리 경제가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하는 데 기여한 기업경영의 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재벌이 해체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고갈되고 해외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산업자본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그룹식 경영에 있음을 깨닫고 IMF 경제위기 기간 중, 재벌해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본래 이 운동은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株主의 이익을 높이려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을 잘못해서 株主에게 피해가 돌아간 회사들이 소액주주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株主 이익의 提高보다는 社外이사 추천 등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에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대상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우량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 기업들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먼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액주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株主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액주주운동은 민중운동인가?

참여연대는 1999년 SK텔레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는 부당한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의 유상증자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그렇지 않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액면분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법원에서도 경영진의 유상증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상증자를 반대했던 국제자본인 타이거 펀드는 유상증자를 수용하면서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SK텔레콤 유상증자 반대운동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외국자본과 제휴하여 국내기업을 법원에 제소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국제적인 기업지배구조평가기관인 ISS로부터 「기업 지배구조 우수賞」을 수상하자 부적합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이처럼 참여연대가 전개하는 소액주주운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株主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조희연 교수는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은 재벌을 포함한 경제권력에 대한 民(민)의 저항의 「다양한」 행동수단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조희연 교수의 주장만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민중운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핵심 인사가 소액주주운동을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소액주주운동처럼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운동이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활동들도 언제든지 계급운동의 차원으로 변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시민단체의 몫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株主의 이익을 提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인 고려대 張夏成(장하성) 교수는 「삼성전

자의 株價가 低評價(저평가) 돼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이며,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株價에도 도움이 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삼성전자가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社外이사를 받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기업지배구조만 개선되면 기업가치가 증대하는가. 기업의 가치는 기술 개발, 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기업활동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지배구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초, 참여연대는 데이콤에 社外이사를 추천하여 관철시켰다. 이를 張夏成 교수는 「깜짝 놀랄 만큼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고, 언론들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춰서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데이콤은 勞組의 장기 파업과 使측의 직장 폐쇄로 참여연대가 개입할 당시 70만원 대였던 株價가 1년이 못돼서 3만원대로 폭락하고 말았다.

데이콤이 경영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社外이사를 받아들이면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株價가 상승하며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옳기만은 않은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결국 기업지배의 옳고 그름은 시민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자신의 경영환경과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이다. 진정 시민단체가 기업의 투명경영을 걱정한다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기보다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시장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너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장단점

참여연대는 소위 總帥(총수)의 전횡, 즉 오너 경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문 경영인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측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오너경영의 편견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 신속한 의사결정 등 기업이 정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오너가 의사결정의 구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되고 책임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왔던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주간지인 「닛케이 비즈니스」誌가 「일본 기업이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1위를 내준 것은 오너가 없는 전문경영자들의 결단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 점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마지막 책임을 지는 사람은 大株主(대주주)이다. 이들이 기업경영

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운석 前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자료에서 「참여연대가 노동자와의 연대 수준을 높여 노동자를 사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사회개혁과 진보의 길에 계속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노동운동세력과 연대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노동운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조합도 일반 시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노동운동의 요구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노동운동과 일반시민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시민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가 1999년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여 파업을 벌였다. 이 때 YMCA와 과소비추방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종교·소비자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연대회의가 일반 시민의 피해를 이유로 지하철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YMCA의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勞組는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金起式(김기식)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서울시나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있을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兩非論的(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여론에 밀려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다음에는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철회, 또는 최소화 조치 등 이후 처리 과정에서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연간 운영 적자가 3500억원에 이르고 총 누적 부채는 무려 3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199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잉 인력과 인건비 과다 지출 등 방만한 운영이 지적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勞組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14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취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파업 중단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勞組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시민의 이익에 앞서 노동단체의 입장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중운동과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하는 까닭

우리 사회에서 참여연대가 어느 정도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과거 민중운동의 모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일반 시민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참여연대가 소위 「진보적 재야운동의 전통」을 있다는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액주주 운동과 같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운동이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석되는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부당할 정도의 편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활동에서도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단체로서의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非계급적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들도 언제든지 계급지향의 사회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여연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필자는 참여연대가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과 일정한 선을 그을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시민의 이해를 기준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공공의 善을 추구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로서의 자기 규정을 확실하게 하기를 요청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할 때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계급운동의 연장선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자본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민중운동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들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자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요청은 유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가 모토로 내세우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옳다면 민중운동과는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참여연대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참여연대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Ⅲ. 이 사건 제1-5기사 내용의 허위 · 왜곡성

1. 이 사건 제1-5기사의 요지

2. 이 사건 제1-5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가.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반박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한 반박

다. 이 사건 제3기사에 대한 반박

라. 이 사건 제4기사에 대한 반박

마. 이 사건 제5기사에 대한 반박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은 적어도 원고들에 관한 한 모두 거짓 내용이며, 이는 피고들의 현실적 악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3. 소 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1-제5기사는 대부분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으로서 원고의 명예와 인격을 엄청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민병균은 이 사건 제1,2기사의 작성·공표자이고, 피고 피고 박종찬은 이 사건 제3,4,5기사의 작성·공표자이며, 그리고 피고 법인은 피고 민병균, 피고 박종찬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제1-4기사가 실

려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자이므로, 피고 법인 및 피고 민
병균은 이 사건 제1,2기사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리고 피고 법인 및
피고 박종찬은 이 사건 제3,4기사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박종찬
은 이 사건 제5기사의 불법행위자로서 각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IV.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무형적 고
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것인 바, 그 금액은 피고
들이 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공표한 목적, 공표한 경위와 그 방법,
분량과 악의성의 정도, 허위·왜곡·날조의 정도, 피고들의 경제적 능
력의 정도, 원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및 명망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들의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및 피고 민병균은 이 사건 제1,2기사에 대
하여 적어도 금1억원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및 피고 박종
찬은 이 사건 제3,4기사에 대하여 적어도 금 1억원, 피고 박종찬은 이
사건 제5기사에 대하여 적어도 금 1억원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V.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1. 갑제1호증 정관 1통.
- 1. 갑제2호증

첨 부 서 류

- 1. 소장 부분 3통.
- 1. 위 각 입증방법 각1통.
- 1. 주민등록등본 2통.
- 1. 정관 1통.
- 1. 위임장 1통.

2001. 7. .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서울지방법원 귀중